입법동향 – 2025년 제10호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

일 잘 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차 례

□ 2025-제10호 미 작성 자료 안내

◆ 미 작성 자료

- **Ⅴ. 자치법규 의견 제시 사례**
- **Ⅵ. 법령 해석 사례**

◆ **미 작성 사유**: 2025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유성구 소재) 화재로 인한 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 서비스 중단

Ⅰ. 최근 타 시·도 입법 동향

1.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 7
2. 「제주특별자치도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 ····· 10
3. 「경상북도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13
4. 「대구광역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 18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 동향

1.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 ····· 23
2.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27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1. 「일본의 인공지능 관련 정부조직 입법례」 ····· 31
2.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 39

Ⅳ. 공공정책 정보 안내

◇ 「공공정책 정보」(메일링 서비스) ····· 49

Ⅰ. 최근 타 시·도 입법 동향

Ⅰ. 타 시·도 입법 동향

1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9. 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4053호, 2025. 9. 3., 제정】

□ 상임위원회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제정이유

◇ 제주지역에서의 **환경관련 민원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환경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정보 공개에 대한 의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 관련 법규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환경관련 법규 위반 업소 공개 대상에 대해 규정함(제2조).
나. 위반행위 내용 등 공개방법에 대해 규정함(제3조).
다. 위반업소 공개에 따른 사전통지에 대해 규정함(제4조).

□ 타 시·도 제정 현황 : 제주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우리 도는 환경오염감시에 모든 도민이 참여하여 누구나 환경오염행위 발견 즉시 쉽고,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환경신문고(☎128번)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명절 등의 연휴기간에는 14개 시군과 협력 하여 산업단지 및 하천 주변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사고와 불법 배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도민들의 환경오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공공기관저널 2025. 1. 26.)

○ 신고된 사항에 대해 **위법행위가 인정**될 때에는 **행정조치**하거나 **관할기관 이송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회신하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임.

○ 「**환경정책기본법**」 **제30조제3항** 등 **상위 법령**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환경오염 사업자에 대한 경각심 등의 고취**를 위해서는 환경법규 위반업소 공개를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9. 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4053호, 2025. 9. 3.,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 및 관련시설의 **명칭과 위반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사업자에게 **도덕적 경각심**을 주고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여 제주의 청정자연 보전과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공개의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3.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4.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4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관리시설 또는 사업장**
6. **「악취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신고대상시설 외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7. 1호부터 6호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등록을 받지 아니 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또는 설치한 자**

8. 위 규정 외에도 환경관련법규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로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업소 및 위반자

제3조(공개 방법) ①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행정시 누리집 포함)에 3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일간신문, 지역신문, 지역유선방송 등을 통해서도 공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도지사가 공개하는 사항은 위반행위를 한 자(사업장 명칭, 소재지), 점검일자, 위반행위의 내용, 행정처분의 내용 등**으로 한다.

제4조(사전통지)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업소 및 사업자 등에게 공개할 내용 및 방법에 대해 미리** 알려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

【시행 2025. 9. 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4057호, 2025. 9. 3., 제정】

□ 상임위원회 : 경제산업건설위원회

□ 제정이유

◇ 지진 및 기타 진동·충격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진설계 및 감리를 거쳐 사용승인된 건축물이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표시하도록 권장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내진설계 건축물 관리번호 부여에 대해 규정함(제3조).
나. 내진건축물 표지판 부착에 대해 규정함(제4조).
다. 내진건축물 정보 공동이용에 대해 규정함(제6조).

□ 타 시·도 제정 현황(2곳) : 제주, 전남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4.8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여 **부안군 등에서 500건 이상의 시설 피해**가 보고됨(2024년 6월 12일).

○ **도내 건축물의 내진 설계율은 60%**에 이르지만 **민간 건축물로 범위를 좁히면 16%이하**로 떨어지고 있음(서울신문 2024. 6. 17.).

○ 우리 도에서는 부안 지진발생 이후 **내진설계의 개선을 위해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건축허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내진설계 확인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해당 건축물이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도민이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도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진설계 적정성 검토** 등과 함께 **내진설계 건축물에 관리번호가 부여된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

【시행 2025. 9. 3.,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4057호, 2025. 9. 3.,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 및 기타 진동·충격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진설계 및 감리를 거쳐 사용승인된 건축물이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표시**하도록 권장하여 내진설계 건축 분위기 확산 및 공개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내진설계 건축물”(이하 “내진 건축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건축법」 제48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내력을 가진 건축물**
2. 「건축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91조의3에 따라 **관계 전문기술자의 확인 및 협력을 마친 건축물**

제3조(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부여)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를 행정시(동별) 및 읍·면별 사용승인 연월일 순으로 부여**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부여한 **관리번호를 전자기록 방식으로 관리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한다.

제4조(표지판 부착)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부여된 건축물 **관리번호가 포함된 내진 건축물 표지판을 해당 건물에 부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제5조(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를 취소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건축물 내진설계 및 감리를 받은 경우
2.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 관리번호가 취소된 경우 내진 건축물 표지판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제6조(내진 건축물 정보 공동이용) **내진 건축물의 사용승인 현황**을 「전자정부법」 제36조, 제38조에 따라 공동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용승인된 내진 건축물에 대하여는 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신청 접수순에 의거 부여한다.

3 【제정】 경상북도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5. 10. 20., 경상북도조례 제5368호, 2025. 10. 20., 제정】

□ 상임위원회 :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제정이유

◇ 장애어린이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치료, 교육, 돌봄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경북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제4조).
나.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진료대상에 대해 규정함(제8조).
다.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운영위원회에 대해 규정함(제11조).

□ 타 시·도 제정 현황 : 경북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우리 도는 **2019년** 복지부 공모사업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18세 미만 장애아동)와 **권역재활병원**(2차장애와 후유질환 대상)**에 각각 선정**되었으며, **2021년**에는 2개 사업을 연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함**.

◆ 위치: 예수병원 제2주차장 일원
◆ 예산: 764억원(국비 269, 지방비 277, 자부담 218)
◆ 규모: 지하 3층, 지상 7층
◆ 시설: 전문재활의료기관 낮병동(20병상), 입원(150병상), 외래진료실

○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실시설계 적정성검토, 타당성 재조사, 교통영향평가 등을 완료하였고, **2027년 통합재활병원 준공 및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는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며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로 통합재활병원 준공 전 재활의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경상북도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5. 10. 20., 경상북도조례 제5368호, 2025. 10. 2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어린이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치료, 교육, 돌봄 기능을 제공하는 경북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장애어린이는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어린이는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장애어린이는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에서 비장애어린이와 동등한 접근권을 가진다.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장애어린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② “돌봄”이란 상담, 사례관리, 정보제공, 지역사회 연계 서비스 지원 등의 업무를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어린이의 건강과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어린이에 대한 건강관리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라 **경북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센터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제3항 각 호에 대한 업무
2. 장애어린이에 대한 진단 및 재활치료에 관한 업무
3. 장애어린이의 교육 및 돌봄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어린이 재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8조(센터의 진료대상) ① 센터의 진료대상은 장애어린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특징 및 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북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어린이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제9조(의료수가 등) 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료수가 및 진료기간, 진료비의 징수 및 감면 방법, 그 밖에 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센터장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채용)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4제3호에 따른 인력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북권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건의료제공 및 공공재활서비스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전년도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
3. 센터 시설 계획 및 변경, 장비 구매 등에 관한 사항
4. 센터 내부 규정에 관한 사항
5. 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항
6. 제10조제2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 센터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장애인 단체 또는 장애어린이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
2. 공공의료전문가
3. 재활치료전문가
4. 사회복지사
5.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6.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장애어린이 치료, 교육, 돌봄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제정】 **대구광역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0. 10., 대구광역시조례 제6321호, 2025. 7. 10., 제정】

□ 상임위원회 : 문화안전소방위원회

□ 제정이유

◇ **비대면 소비문화의 확산**과 **인건비 절감** 등의 영향으로 **무인점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화재 및 범죄에 대한 취약성 또한 함께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무인점포의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시장이 추천할 수 있는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 규정함(제4조).
나. 소방시설 설치 조사 및 화재 예방 방안 등에 대해 규정함(제5조).
다. 범죄예방 대책 및 관계기관 협력에 대해 규정함(제6조).

□ 타 시·도 제정 현황 : 대구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최근 **무인점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무인점포 현황(전국): 2023년 6,323개소 → 2024년 9,030개소

○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우리도의회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5. 10. 20.)에서 이수진의원 발의로 소규모 무인점포의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 법률 개정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

○ **법률 개정 전** 무인점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태조사, 예방사업 등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대구광역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0. 10., 대구광역시조례 제6321호, 2025. 7. 1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소재하는 무인점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화재 및 범죄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인점포 사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점포”란** 관리주체 및 **관리인력 없이 소비자가 무인계산대 등을 이용하여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점포**를 말한다. 다만, 심야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만 무인으로 운영하는 점포는 제외한다.
2. “안전관리”란 무인점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범죄,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기관 등의 예방 활동**을 말한다.
3. “사업자”란 무인점포를 실제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인점포의 안전관리를 위해 분야별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안전관리 사업 등) ① 시장은 무인점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관내 무인점포의 업종 및 지역별 실태조사
2. 안전관리 지침서 및 매뉴얼 제작
3. 화재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4. 무인점포내 개인정보 침해 예방
5. 그 밖에 시장이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화재예방) ① 시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무인점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발생 위험이 큰 무인점포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무인점포 사업자에게 **화재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① 시장은 무인점포에서 발생하기 쉬운 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특히 아동 및 청소년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무인점포에서의 **범죄예방을 위해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매장 내·외부 고화질 CCTV 설치 및 관리
2. 비상벨, 경보시스템 등 물리적 방범 장치 설치
3. 범죄예방을 위한 경고문, 범죄행위 처벌 안내문 부착
4.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출입 시간 제한 시스템 구축

제7조(민관협력)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경찰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구·군 등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 동향

Ⅱ. 국회 및 중앙정부 입법동향

1 【일부개정】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5. 9. 19., 대통령령 제35739호, 2025. 9. 9.,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 식생활 교육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은**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신 설>	제15조(사회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법 제26조의2***에서 "사회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사회 식생활 교육과정의 운영 3. 사회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4.** 그 밖에 사회 식생활 교육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추가적인 시책**을 정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법 제26조의2(사회에서의 식생활 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 사회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필요한경비의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기술대학 등 각종학교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 해당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식생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른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예절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함.

○ 우리 도는 상위법령에 따라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하여 선정**하고 있음.

【수행기관 선정 주요 내용】

- 사업기간: 2025. 4. ~ 12.
- 사업비: 170백만원(국비 85, 도비 85)
- 주요사업내용

구분	세부사업명	사업대상
농식품부 지정사업 <필수>	체험 연계 식생활 교육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보육·교육기관 및 학교 교사 등 대상 식생활교육	보육·교육기관 및 학교교사, 영양(교)사(학교조리사 가능)
	맞춤형 식생활교육	유아, 아동, 1인가구, 청소년, 고령자 중 선택
지자체 자율사업 <권장>	**로컬푸드활용,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자율 편성**	도민

○ 다만, 최근 상위법령 개정으로 **'학교 및 어린이집에서의 식생활 교육'**이 → **사회에서의 식생활 교육(대학교 포함)**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전북특별자치도 식생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5399호, 2023. 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식생활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교육을 추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7. (생략)

8.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9.~10.

제3조(도지사의 책임과 의무) (생략)

제4조(도민의 책임과 의무) (생략)

제5조(식생활 교육의 추진) (생략)

제6조(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 (생략)

제7조(식생활교육 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국가식생활교육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식생활교육계획(이하 “전북자치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북자치도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식생활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 ④ (생략)

제8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생략)

제9조(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생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생략)

제11조(위원의 위촉) (생략)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생략)

제13조(위원의 해촉) (생략)

제14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 (생략)

제15조(수당과 여비) (생략)

제16조(시행규칙) (생략)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 【제정】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5. 9. 19, 대통령령 제35747호, 2025. 9. 16., 제정】

□ 제정이유

◇ 고교학점제의 시행에 맞춰 학생이 학교 및 지역 여건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으로 온라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근거**가 마련되었는 바, **온라인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신 설>	**제13조(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 ⑤ (생략) ⑥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 선출 방법, 임기 및 자격 상실 등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 ⑤ (생략) ⑥ 운영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회의 소집의 일정·방법 및 의견 수렴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도의회 입법 시사점

◆ 위원회: 교육위원회

◆ 해당조례: 없음

○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임.

※ 과목 이수 기준: 수업 2/3이상 출석, 학업성취율 40%이상, 3년간 192학점 이상 취득

○ 고교학점제는 **자기주도적 학습 동기 부여의 장점**이 있지만 **대도시와 지방, 학교 규모에 따라 교육 기회 격차가 발생**하는 등의 **단점***도 있음.

*작은학교는 **다양한 과목 개설이 어려워**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듣기 힘든 경우 발생

○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온라인학교의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는 바,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Ⅲ. 최신 외국 입법 정보

1 일본의 인공지능 관련 정부조직 입법례

【국회도서관, 2025-18호(통권 제281호), 조경희】

◇**인공지능은** 인간의 인지, 추론 및 판단 능력을 대체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창의적인 성과를 생성**해 내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에서 **부적절한 데이터가 사용될 경우**, 생성물에 왜곡이나 편향이 발생할 수 있어 **윤리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법률은 기술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잠재적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 거버넌스(민관협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 **일본은 2025년 6월 4일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같은 날 「내각부설치법」을 개정하여 **인공지능 관련 사무를 내각 차원의 정책사무**로 정하였다. 그리고 9월 1일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내각관방장관과 인공지능전략 담당 대신을 부본부장으로 한 **인공지능 전략본부를 설치**하였다. 특히 인공지능전략담당대신은 내각총리대신의 명을 받아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권과 권고권을 가지고 있어, **내각이 인공지능 정책 컨트롤 타워로 기능**할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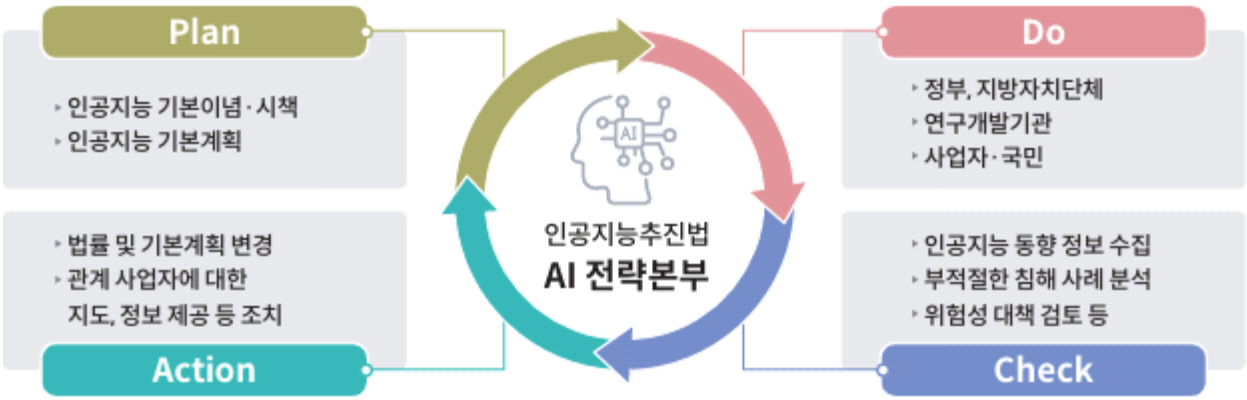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2025년 1월 2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26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 정부는 범국가적 인공지능 대전환을 목표로 기존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였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민간전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의 장관이 부위원장을 담당하고 있다. **인공지능 관련 법률이 산업계의 자율적인 대응을 지원하는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일본의 인공지능 거버넌스 구축 사례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 도입

❍2025년 6월 제정된 **일본의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인공지능추진법')이 **9월 1일 전면 시행**되었다.

- **인공지능추진법은** 인공지능 관련 사업자를 직접 규율하는 강행법률이 아니라, 기존 개별 법률의 적용과 정부 가이드라인(AI 사업자 가이드라인 등)에 따른 **사업자의 자율적인 대응을 유도하는 포괄적 성격의 법률**이다.
- 이러한 규율 방식은 아래의 그림처럼 **'규제'보다는 '활용 촉진'에 중점**을 두고, **인공지능 전략본부(이하, 'AI전략본부')를 중심**으로 **'계획·실행·평가·개선(Plan·Do·Check·Action, PDCA)의 순환 구조로 운영**된다. 즉, **AI전략본부가 인공지능 기본계획(Plan)을 수립**하고 (법 제18조~제28조), **연구개발기관이나 사업자 등이 이를 실행(Do)한다**(법 제4조~제8조). **정부는 실시 상황의 적정성을 조사**(Check)한 후에, **필요한 조치**(Action)를 강구한다(법 제13조, 제16조).

그림 1 일본 인공지능추진법의 PDCA 구조



출처: スマートガバナンス 참고[2]

❍ 내각에 설치된 **AI전략본부는** 법의 기본이념과 기본시책을 토대로 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며, 관련된 정책의 **종합조정을 담당**한다.

- **AI전략본부의 인공지능전략담당대신**(이하 'AI전략담당대신')은 내각부 소속 특명담당 대신이자 국무대신으로, 내각총리대신의 명을 받아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특명담당대신은 과거 우리나라의 정무장관(특임장관)과 혼동되기도 하지만, **AI 전략담당 대신은** 인공지능 업무뿐만 아니라 경제안전보장, 지식재산전략, 과학기술정책, 우주정책, 일본재흥전략의 업무도 겸임한다는 점과 내각총리대신으로

부터 특정 업무에 관한 **종합 조정권을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 아울러 **2025년 8월 1일 내각부에 인공지능정책추진실이 신설**되었으며,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조사회(專門調査会)가 설치될 예정**이다. **전문조사회는** 특정 조사 목적이 달성되면 해산되는 **임시 기구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전문적인 자문 및 조사 기능을 수행**한다.

□ 인공지능 관련 정부조직

1. AI전략본부

❍ **인공지능추진법은** 범정부 인공지능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AI전략본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AI전략본부는 내각총리대신과 전 국무대신이 참여하는 기구**로,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 내각관방장관과 AI전략담당대신을 부본부장, 그리고 그 이외 국무대신 전원을 본부원으로 한다.
- **내각관방장관**은 「국가행정조직법」에 근거하여 **내각총리대신을 보좌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 국무총리에 해당**한다. 그리고 **AI전략담당대신은** 내각총리대신의 명을 받아 인공지능 관련 기술 개발·활용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며, **우리나라 국가인공지능전략 위원회의 부위원장**에 해당한다.
- **내각부에는** AI전략본부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정책추진실이 신설**되었다. 인공지능정책추진실은 인공지능 활용으로 국민의 권리 침해가 발생할 경우(생성형 AI를 이용한 딥페이크로 가짜 동영상이 유포된 경우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다.
- 또한 **내각부는**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작성과 관련 지침의 정비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전문조사회(專門調査会)를 설치**한다(인공지능전략본부령5)). **전문조사회는 그 조사 목적이 달성**되면 해산되는 **임시 기구**로, 내각총리대신은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비상근직 전문조사회 위원을 선임한다.

❍ 인공지능추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AI전략본부의 소관 사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 **AI전략본부는 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무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시책 중 **중요 사항의 기획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 인공지능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AI전략본부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표명 및 설명 등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나 인공지능 관련 단체에도 협력을 의뢰**할 수 있다.

2. AI전략담당대신

❍ **AI전략담당대신**은 「헌법」과 「내각법」에 근거하여 임명되는 **국무대신(國務大臣)이자**, 내각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특정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성청등개혁기본법」과 「내각부설치법」에 의해 설치된 **특명담당대신(特命担当大臣)이다.**

❍ **국무대신은** 내각의 구성원으로 내각총리대신에 의해 임명된다. AI전략담당대신은 국무대신이므로 **내각법상 국무대신 정원 규정을 적용**받는다.

- **헌법**에서는 내각이 **내각총리대신과 국무대신으로 구성**되며, 이 국무대신을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헌법 제66조, 제68조). **내각법**에서는 국무대신을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일반 행정사무를 분담·관리하는 **주임대신(主任大臣, 주무장관)과** 그렇지 않은 **무임소대신(無任所大臣, 무임소장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명담당대신이 대표적인 무임소대신**이다(내각법 제3조).
- 내각법은 국무대신 정원을 14인 이내로 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3인을 증원(상한 17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내각법 제2조12)). 일본 국무대신의 정원은 내각법 부칙 개정으로 증감이 이루어져 현재는 정원 16인(상한 19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1 일본 내각 국무대신(특명담당대신 포함)의 정원

기간(년)	정원	상한	내용
2001~2012	14인	17인	• 중앙성청등개혁기본법과 내각법에 규정
2012~2015	15인	18인	• 부흥청 설치로 부흥대신 추가(부흥청 폐지까지)
2015~2020	16인	19인	• 올림픽추진본부 설치로 올림픽담당대신 추가(올림픽 폐지까지)
2020~2022	17인	20인	• 국제박람회추진본부 설치로 만국박람회담당대신 추가(박람회 폐지까지)
2022~현재	16인	19인	• 2022년 올림픽추진본부 해산으로 정원과 상한 각 1인 감소

주: 국무대신 정원은 부흥청설치법 등에 의해 내각법 부칙 개정으로 이루어짐

❍ **특명담당대신은** 중앙성청등개혁기본법과 내각부설치법에 근거하여 **법제화된 직위**이다.

- **1996년 하시모토 내각은** 당시의 수직적 행정조직의 폐해를 극복하고 내각 주도의 정책 결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내각총리 직속으로 **행정개혁회의를 설치**하였다.
- **행정개혁회의는** 내각총리대신의 리더십 제고를 통한 내각 기능의 강화를 목표로 내각총리 대신의 내각회의 발의권 신설, **내각총리대신을 보좌**하고 **각 부처의 정책을 종합조정하는 내각부 설치** 그리고 **내각관방 권한 강화를 제시**하였다(행정개혁회의 최종보고서).
  - 최종보고서는 특히 **"특정 부처를 지정하기 어려운 국정 현안에 대해 내각부가 종합적으로 조정**하고(기획, 발안 및 조정 포함),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국무대신을 두며, 내각총리대신의 명을 받아 강력한 조정권(자료 제출, 권고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여, 이전에는 없었던 **종합조정기능(조정권)을 내각부에 부여**하였다.
- **행정개혁회의 최종보고서의 내용 대부분은** 중앙성청등개혁기본법에 반영되어 **내각부 설치와 특명담당대신 제도로 구체화**되었다(중앙성청등개혁기본법 제11조). 그리고 「내각부설치법」이 제정되어 **내각부를 신설**하였고, 내각총리대신이 내각의 중요 정책을 통일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특정 업무를 전담하는 국무대신으로서 특명담당대신을 둘 수 있게 되었다**(내각부설치법 제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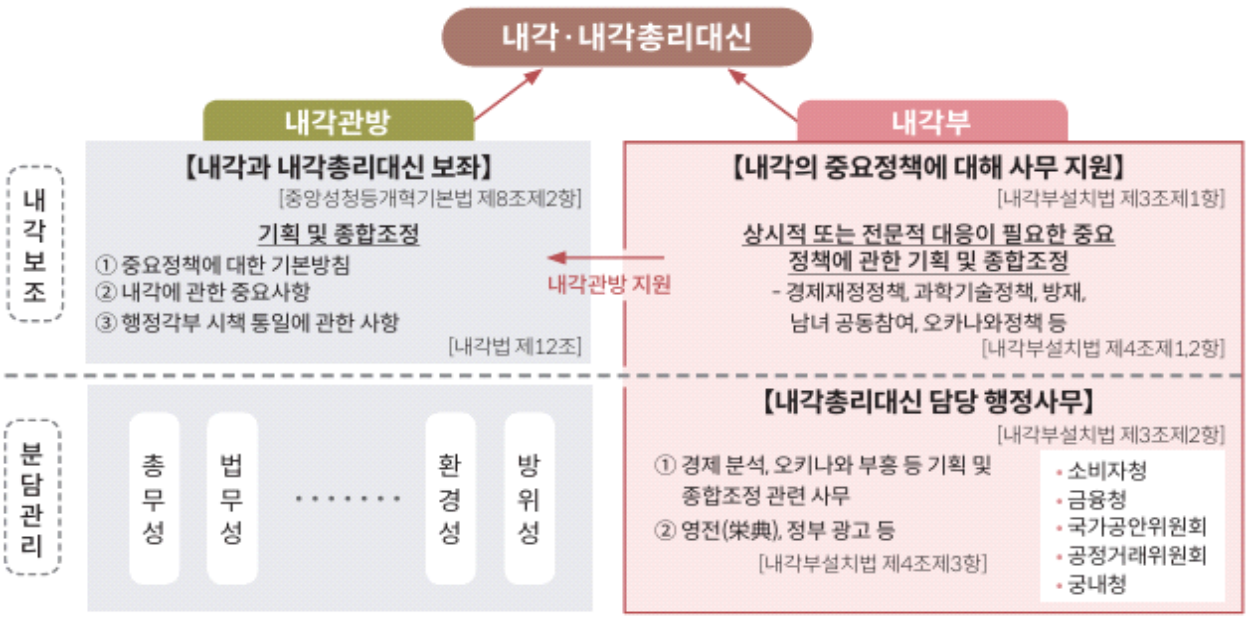
❍ 특명담당대신의 정원은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필수로 설치해야 할 특명담당대신만을 규정하고 있다.

- **필수 설치 특명담당대신**으로는 **금융담당, 소비자·식품안전담당, 아동·저출산담당, 방재담당, 오키나와·북방대책담당**이 있다(내각부설치법 제9조의2)
- 이 외의 **특명담당대신은** 새롭게 부상한 **국가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법(인공지능추진법 등)에 근거하여 추가되고 있다. 다만 **국무대신 전체 정원16인(상한 19인)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명의 특명담당대신이 여러 정책을 겸임하는 구조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제도적 배경으로 **AI전략담당대신은** 인공지능 정책뿐 아니라 **경제안전보장, 지식재산전략, 과학기술정책, 우주정책, 일본재흥전략 정책도 겸임**하고 있다.

❍ 일본 내각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인 주임대신과 특정 현안을 전담하는 특명담당대신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내각 업무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있다.

- 아래 그림처럼 **내각관방**, 내각부 그리고 중앙행정조직(일본명: 중앙성청)은 **조직적으로 상호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필요할 경우 **주임대신이 여러 특명담당대신의 직위를 겸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 예를 들어, 재무성의 주임대신인 **재무대신은 금융담당 특명담당대신을 겸임**하고 있고, **경제산업성 경제산업대신이 원자력 손해배상 특명담당대신**을 함께 맡고 있다.

그림 2 내각(내각총리대신, 내각관방, 내각부, 성청)의 역할



출처: 참의원 입법과 조사[17]

- 2025년 6월 4일 제정된 인공지능추진법과 동시에 개정된 **내각부설치법(2025.9.1. 시행)은 내각부 소관 사무에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포함**시켰다(내각부 설치법 제4조18)). 이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사무가 내각부 관할로 편제되었으며 **AI전략담당대신이 신설**되었다.

□ 우리나라와 일본의 인공지능 관련 정부조직 비교

❍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신뢰 기반의 조성을 위해 **범정부적 인공지능 정책 컨트롤타워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소속의 **국가AI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내각 소속의 AI전략본부**를 두고 있다. 양국 정책 조직의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 우리나라와 일본의 인공지능 정책 조직 비교

구분	우리나라 국가AI전략위원회	일본 AI전략본부
설치 목적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AI전략위원회를 설치	•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각에 AI전략본부를 설치
위원장 (본부장)	• 위원장: 대통령	• 본부장: 내각총리대신
부위원장 (부본부장)	• 3인의 부위원장을 둠 • 2인의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상근으로 겸임 • 1인의 부위원장은 상근직으로 민간전문가가 담당	• 2인의 부위원장(내각관방장관, AI전략담당대신) • 내각관방장관은 내각총리대신의 보좌기관임 • AI전략담당대신은 특명담당대신으로 종합조정권을 가짐
위원 (본부원)	• (1인의 위원장과 3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 50인 이내로 구성	• (1인 본부장, 2인 부본부장 이외) 17인의 국무대신 전원으로 구성
기타 조직	•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자문단 •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 • 국가AI전략위원회지원단 • 인공지능분야 전문가(임기공무원) 등	•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조사회 (비상근 위원, 조사업무 완료 시 폐지) • 내각부 인공지능정책추진실

-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작성한 **기본계획을 국가AI전략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확정**하며, **3년마다 이를 재검토**한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위원장(대통령)과 3인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일본의 AI전략본부는** 정부 부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직접 수립**하며, **내각부 특명담당대신이 실질적인 종합조정을 담당**한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은 내각총리 대신의 요청으로 내각회의에서 확정**되며, **필요시 수시 개정**된다. AI전략본부는 내각총리 대신과 국무대신 전원으로 구성된다.

❍ 일본의 AI전략담당대신은 과거 우리나라 정무장관(후에 특임장관) 제도와 유사한 무임소 국무위원이지만, 인공지능 정책 수립 및 집행에서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점에서 구별된다.

- **우리나라 정무장관(특임장관)은** 주로 **행정부와 입법부 또는 행정부와 정당 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직위였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대응 역량이 충분할 경우**에는 **설치 필요성이 낮아져** 정무장관직의 **신설과 폐지를 반복**했으며, **2013년 최종 폐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반면 **일본의 AI전략담당대신은** 인공지능 관련 업무에 관한 **종합조정권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는 예산 요구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특명담당대신은 **내각이 추진하는 중요 정책을 통일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어떤 특명담당대신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통해 **해당 내각의 정책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다.

추천 자료

- 국회도서관, "일본의 인공지능(AI) 개발·활용 추진 입법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73호, 2025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인구위기 대응 전담 중앙행정기관 신설, 정무장관 신설)", 2024
- 国立国会図書館, "AIと社会のこれからを考える(科学技術に関する調査プロジェクト)", 2025
- 参議院(五十嵐吉郎), "内閣官房, 内閣府の現在: 中央省庁改革から13年目を向かえて", 立法と調査 第347號, 2013

2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국회도서관, 2025-17호, 통권 제280호, 김지현】

❍ 2025년 7월 23일 UN 산하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기후변화 관련 국가 의무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내놨다. 이는 2023년 3월 29일 UN총회에서 채택한 **‘결의 77/276’에 따른 것**이었다.

❍ **UN총회는** ‘결의 77/276’을 통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언급**하면서, **기후변화 관련 국제법상 국가가 부담하는 의무**와 이러한 의무에 기반하여 **심각한 환경 피해를 야기한 국가에 부과되는 법적 결과에 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다.

❍ 이에 **국제사법재판소는** 기후변화조약 등이 **당사국에 부과하는 구속력 있는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국가의무를 위반하면** 국가책임이 따르는 **국제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배상 등의 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권고적 의견을 발표하였다.

❍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 **향후 기후변화 관련 논의에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파리협정 등 기후 변화조약 당사국인 우리나라** 역시 이번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관련 법령 UN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탄소중립기본법
주제어 국제사법재판소, 권고적 의견, 상당한 주의, 온실가스, NDC

□ **UN총회의 '결의 77/276' 채택**

❍ **UN헌장 제96조**에 따르면 **UN총회는 법적 문제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에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요청**할 수 있다. **UN총회가 결의 등을 통해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면, 국제사법재판소는 UN 당사국 등으로부터 관련 서면진술서를 받고 구두절차상 발언을 들은 후 **해당 법적 문제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발표**한다.

❍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등의 문제**를 겪던 **바누아투공화국은** 2023년 UN총회에서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요청"이라는 내용의 **'결의 77/276'의 채택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2023년 3월 29일 UN총회는 본회의에서 '결의 77/276'을 채택**하였다.

❍ **'결의 77/276'은 군소도서 개발도상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들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특히 취약**하며,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 등으로 **사람들의 이주가 가속화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면 상승**을 일으키는 지구 온난화의 주된 원인이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점을 들어,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무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공식적으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한 것이다.

❍ **국제사법재판소는** UN 산하 사법기관으로서 **두 가지 형태의 사안**을 다룬다. **첫째, 국가가 제소한 법적 분쟁 사안**을 다루거나, **둘째, UN 기구 등이 법적 문제에 관하여 제기하는 권고적 의견 요청 사안**을 다룬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으나**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국제법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의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결의 77/276’에서 언급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201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UN기후변화협약(UNFCCC)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다자협정**으로, UN기후변화협약의 의무를 보다 구체화하였다.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당사국들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5)를 설정·통보·유지**하고, **5년마다 진전된 목표를 통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 감축조치 이행도 규정하였다.

❍ **우리나라는** 파리협정 발표 전인 **2015년 6월 ‘잠정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를 UN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수정 로드맵을 거쳐 **2021년 12월에 상향된 목표의 ‘2030 감축목표’를 제출**하였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는 목표를 확정하였다. 또한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탄소중립기본법에도 규정**하였다.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31년 이후 감축목표**를 포함하여 보다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내용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2025년 7월 23일 국제사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140쪽에 달하는 **권고적 의견을 발표**하였다. **8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국제사법재판소가 **29건의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으나 **만장일치로 발표한 경우는 이번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무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포함하여 5번뿐**이다. 이에 이번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의 내용과 의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절차

❍ UN총회의 국제사법재판소 권고적 의견 요청

- 2023년 4월 12일 **UN사무총장이** 공식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결의 77/276'의 채택을 통보**하고 다음과 같이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다.

UN헌장 제96조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65조[11]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다음 질의에 관하여 권고적 의견을 요청한다.
UN헌장, UN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해양법에 관한 UN협약, '상당한 주의의무'(the duty of due diligence) 등을 특별히 고려할 때,

국가의무(질의(a)):
국가와 현재·미래 세대에 대하여, 인간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로부터 '기후 시스템과 기타 환경 부분'[12]을 보호하기 위해 부담하게 되는 국제법상 국가의무는 무엇인가?

법적 결과(질의(b)):
다음 대상(①, ②)에 대하여 국가가 작위·부작위를 통해 기후 시스템과 기타 환경 부분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국가의무에 근거한 법적 결과(legal consequences)는 무엇인가?
① 군소도서 개발도상국을 포함하여, 국가의 지리적 환경 및 개발 수준으로 인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받거나 특별히 취약한 국가
②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 현재와 미래의 민족 및 개인

❍ 서면진술서 제출 및 구두절차

- **2023년 4월 20일 국제사법재판소는** UN회원국에 **기한 내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였다. 서면진술서 제출 기간에 **91건의 서면진술서 및 62건의 서면의견이 제출**되었고 이후 공개 구두절차에서 미국, 영국, 한국을 비롯한 96개국과 유럽연합(EU) 및 군소 도서국연합(Alliance of Small Island States, AOSIS) 등 11개 국제기구가 구두 발언을 했다.
- 서면진술서 및 의견·답변을 통해 **각국은 파리협정과 국제관습법 간 관계를 명확히 해줄 것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요청**하기도 하고, 국가에 따라서는 **파리협정 자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약**이지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한 주요 사항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의무가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즉 **파리협정 제4조 제2항이** 당사국에게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통보·유지할 제출 의무는 부과**하지만, 이를 달성할 의무나 구체적으로 **감축조치를 이행할 구속력 있는 의무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한 후 **2025년 7월 23일 권고적 의견을 발표**하였다

□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내용

1. 전반적 사항에 대한 권고적 의견

❍ 국제사법재판소는 먼저 '결의 77/276' 질의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적용법들을 UN헌장, UN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파리협정(이하 '기후 변화조약'), 해양법에 관한 UN협약,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핵심 인권조약, 특정 국제관습법 등으로 명확히 하였다. 또한 해석 지침 원칙으로 '공통이지만 정도에 차이가 나는 책임 및 각자의 역량 원칙'을 들었다.

❍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조약이 국제법상 다른 규범·원칙에 대해 '특별법'(lex specialis)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는 기후변화조약이 특별법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별법은 관련법 간 실제적 불일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기후변화조약 조항과 국제법상 다른 규범·원칙들 간에 실제적 불일치를 발견할 수 없고, 다른 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의도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특별법 원칙의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 국제사법재판소는 파리협정 제4조제2항의 '설정·통보·유지 행위'와 '감축조치 행위'가 모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가의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다. 즉 당사국은 '국가온실 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통보·유지할 의무(결과의무)뿐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감축조치를 추진할 의무(행위의무) 역시 부담한다고 보았다. 또한 국내 감축조치 이행과 관련하여 민간 행위자의 위반행위 규제 및 적절한 수단 활용 등 조치 시행 시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를 기울였는지의 여부로 행위의무의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국제사법재판소는 기후변화가 인류 공통의 관심사**이며, 온실가스 배출로부터 **대기 등 기후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공동 이익임을 분명히** 하였다. 따라서 **국제관습법상 심각한 환경 피해를 방지할 의무는** 국가가 **모든 국가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세적 의무'(Obligations erga omnes)라고 명시**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조약상 발생되는 국가의무** 역시 당사국이 모든 당사국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세적 의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경우 **모든 당사국은** 이에 관한 법적 이익을 가지므로 **다른 당사국의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모든 당사국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2. 국가의무(질의(a))에 대한 권고적 의견

❍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의무에 관한 **'결의 77/276' 질의(a)의** 답변에서 대표적으로 '기후변화조약상 국가의무'와 **'국제관습법상 국가의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구속력 있는 국가의무'(binding obligations)를 명시**하였다.

❍ 기후변화조약상 국가의무

- **기후변화조약의 '당사국**들은 인간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로부터 기후 시스템과 기타 환경 부분을 보호할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를 진다'고 밝히면서, 파리협정과 관련하여 **당사국에게는 다음 의무가 부여**된다고 밝혔다.

① 파리협정 당사국은 협정에서 명시하는 온도목표(temperature goal) 달성에 적절히 기여할 수 있도록 '공통이지만 정도에 차이가 나는 책임과 각자의 역량'에 따른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② 파리협정 당사국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1.5°C로 지구온난화를 제한하는 온도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속적이고 점진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통보·유지할 의무를 진다.

③ 파리협정 당사국은 연속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 명시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추진할 의무가 있다.

④ 파리협정 당사국은 '기술·재원의 이전'(technology and financial transfers)을 포함하여, 적응 및 협력할 의무를 지며, 이를 선의로(good faith) 수행해야 한다.

❍ 국제관습법상 국가의무

- **국제관습법 역시 인간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로부터 기후 시스템과 기타 환경 부분을 보호하는 국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무에는 **다음 의무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① 국가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행위를 통해, 환경에 심각한 피해(significant harm)를 주는 것을 방지할 의무를 진다. 또한 '공통이지만 정도에 차이가 나는 책임과 각자의 역량'에 따라 자국의 관할·통제 하에 행해지는, '기후 시스템 및 기타 환경 부분'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기후 시스템 및 기타 환경 부분'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서로 선의로 협력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할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국가 협력이 필요하다.

3. 법적 결과(질의(b))에 대한 권고적 의견

❍ 국가의무 위반 시 법적 결과에 대한 **'결의 77/276' 질의(b)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고적 의견**을 밝혔다.

'질의(a)의 답변인 권고적 의견에서 명시한 의무'를 국가가 위반하는 경우, 이는 국가책임(responsibility of States)을 수반하는 '국제 위법행위(wrongful act)'에 해당한다. 책임을 지는 국가는 위반한 의무를 이행할 지속적 의무를 진다. 국제 위법행위에 따른 '법적 결과'에는 다음의 의무가 포함될 수 있다.

① **위법행위 또는 부작위가 계속되는 경우**: 위법행위·부작위의 중지

②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법행위 또는 부작위의 재발 방지 약속 및 보장

③ **(위법행위와 피해 사이에 충분히 직접적이고 확실한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등) 국가책임규범의 일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원상회복, 배상, 사과 등[20]의 피해국에 대한 완전한 구제

□ 국제사법재판소 권고적 의견과 의의

❍ 이번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은 여러 측면에서 국제법상 의의**를 가진다. **첫째, 파리협정 제4조제2항의 '법적 구속력 있는 국가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당사국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통보·유지할 의무**뿐만 아니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국내 감축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당사국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 감축조치 이행 시 일정 기준의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파리협정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 둘째,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구속력 있는 국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제법상 국가책임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기후변화조약이 국제법상 다른 원칙 등에 대해 특별법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후변화조약의 의무 위반 시 일반적인 **국제법상 국가책임 법리의 구제방안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셋째, 국제사법재판소는** 지구 환경 및 기후 시스템 보호에 **모든 국가의 공동 이익이 존재**하며, 특히 국제관습법상 **심각한 환경 피해를 방지할 의무는 각국이 모든 국가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세적 의무'**임을 분명히 하였다.

❍ 이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의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살펴보았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상당한 권위**를 가지므로 향후 **기후변화 관련 각종 국제 논의에서 중요한 의견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추천 자료

- 환경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추진상황 및 계획, 2025.
- 국회예산정책처,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현황과 주요 쟁점, NABO Focus, 2025.

Ⅳ. 공공정책 정보 안내

Ⅳ. 공공정책 정보 등 안내

◇ 공공정책 정보

※ 공공정책 정보는 이 달의 주요 정책정보 목록만 기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메일로(메일링서비스) 보내드렸음을 안내드립니다.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10월 셋째주	정무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활성화 : 협력적 관여활동을 위한 제도 정비와 투자자포럼 사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인도 반도체 정책 추진 성과 및 평가 ○독일의 탈석탄 정책 및 석탄화력 폐쇄지원 ○커뮤니티 커머스, 유니콘 기업의 시작 ○일본 수소 산업 정책 동향과 시사점
	외교통일	○한반도 통일전략구상 ○트럼프 2기 신중동 전략과 중동 안보구도의 재편 ○전후 80년, 탈-전후를 향한 일본 정부의 정책 변화와 과제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교육	○과학기술 전주기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의 제도 진단 및 대안 탐색
	기후에너지 환경노동	○대전시민의 일·생활 균형 현황과 정책 지원 방안 ○독일 은행 산별 단체교섭 체계와 공공은행 부문의 특징
	국토교통	○대전 방문 관광객을 위한 교통 측면의 활성화 및 정착 방안 ○노후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 : 2025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세계인공지능대회(WAIC 2025)를 통해 본 중국 AI 발전 현황 및 시사점

주 간	상 임 위	주 요 정 책 정 보
10월 넷째주	행정안전	○1인가구 시대 제주도시 발전을 위한 대응정책의 중요 요소 도출연구
	교육	○영유아 교사 처우 단계적 개선 방안 연구
	기후에너지 환경노동	○도민 참여형 에너지 수요관리 활성화 방안 ○대전시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발생 현황과 감축 방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산업경쟁력 강화의 원동력, 산업특화 소프트웨어의 성장 동인과 주요 사례 ○AI PaaS의 필요성과 글로벌 AI PaaS 동향
	정보	○통신 및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실태와 주요국의 공세적 사이버 안보 정책 : 현황과 과제
	성평등가족	○광주광역시 아동학대예방 및 대응체계 실효성 강화 방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미국 푸드테크 시장 동향 및 진출 전략 ○핵연료 가격의 불안정성과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다자적 협력 모델 검토 : 유렌코 사례를 중심으로 ○(유럽) 저작권 관점에서 본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선제적 수급 관리를 위한 소비 관측 기초 연구
	국방	○생태학적 대전략의 해양 인간안보에의 적용 : 한국의 통합적 접근



전국특별자치도의회

이 자료는 의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입법지원팀)에서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 자료를 요약·정리하여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